



2024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

1.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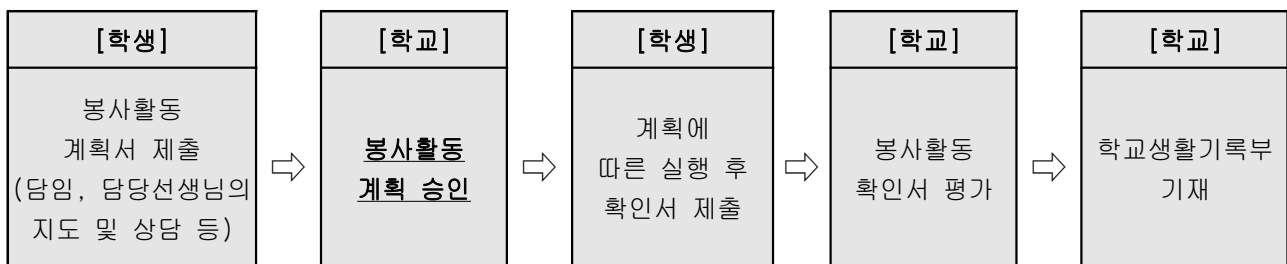
- 봉사활동 시설(장소), 봉사내용 등이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실시
- 봉사영역: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등
- 학교 교육계획 의한 봉사활동

구분	시간	비고
학교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시간	10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됨)
학교 계획에 의한 개인 봉사활동 시간	해당시간	학교 계획에 의한 소집단 봉사활동 권장 (특별구역, 학급환경지킴이, 학교환경지킴이, 교과 도우미 등)

2. 개인별 봉사활동 실시 방법 안내

□ 계획서를 이용한 봉사활동

-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담임(담당)선생님 등의 확인)를 제출하여 학교에서 승인(허락)한 경우에만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봉사활동 계획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 계획서 제출 및 학교장 허가에 의한 개인 봉사활동 인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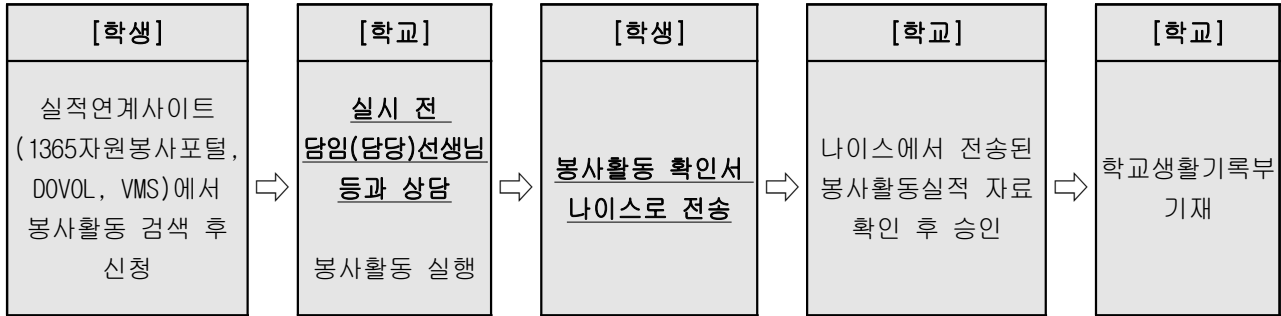


※ 계획서를 이용한 봉사활동은 반드시 봉사활동 전에 학교의 승인(허락)을 받아야 함

□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DOVOL, VMS)를 이용한 봉사활동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임(담당)선생님 등과 사전 상담 필요 [봉사활동 기관(단체)과 내용 확인]
- 1365 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 DOVOL(<http://www.youth.go.kr>), VMS(<https://www.vms.or.kr>)에서 신청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나이스와 연계되어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나이스로 전송해야 함.

-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DOVOL, VMS)를 이용한 개인 봉사활동 인정 절차



※ DOVOL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로 실적 전송 시 공유 가능

※ VMS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로 실적 전송 시 공유 가능

※ 학생이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서를 나이스로 전송해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 봉사활동실적 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봉사활동 시간은 **분 단위는 버리고 시간 단위만 인정**(예: 2시간 30분은 2시간만 인정)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등으로 인정하며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인 경우는 8시간 이내로 인정

구분	평일(수업이 있는 평일)	휴업일 (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 시간	학교 수업시수에 따라 변동	8시간 이내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인정(예: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을 8시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 헌혈은 1일 8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음[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학년도별 3회 이내)]

- 학생봉사활동 인정할 수 없는 기관(단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

▫ **학생봉사활동 인정할 수 없는 활동(예시)**

푸드 마켓에 음식물 기부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운동경기·공연 관람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예: 각종 기념식 참석 등)
인구조사 참여	/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예: 자치회의, 토론회 등)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

3. 인천광역시 봉사활동 인정 대상 기관 확인 방법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부서특화-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생봉사팀을 이용하여 검색
(봉사활동 인정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지 못함)

4. 2025학년도 학생봉사활동 평가 안내

- 아래 내용은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2025학년도 가산점 평가 기준은 3월 말에 공고되는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시 추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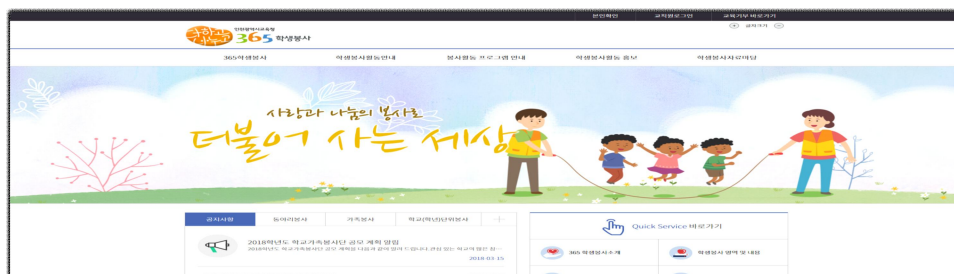
평가 기준	점 수	가 산 점	비고
연간 20시간 이상	4	1	가산점은 교내봉사상을 받은 경우로 한다.
연간 11시간~20시간 미만	3		
연간 11시간 미만	2		

5. 2024학년도 교내 봉사상 수상 기준

- 외부활동 10시간을 포함하여 6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한 학생을 담임 또는 담당교사 추천, 또한 특별히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들도 교사의 추천을 받아 심의를 거쳐 시상

6. 학생봉사활동 홈페이지 운영 안내

- 목적: 봉사활동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
- 홈페이지 주소 : nanum.ice.go.kr (봉사활동 / 교육기부)
- 홈페이지 접속 방법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특화 / 동아시아시민교육과 / 학생봉사 접속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선생님께 문의하거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봉사활동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봉사활동의 Q & A

1.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단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①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 ②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교육청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단체)
 - ③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 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2. **신입생 및 졸업생의 입학 전 및 졸업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
3. **봉사활동 실적이 의심되는 경우 확인서만 보고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실적이 의심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확인 후 인정할 수 있다.
4. **해외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기록할 수 없다.
5. **봉사활동실적 시간 기재에서 분 단위의 기록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고 분 단위는 절사함(단 동일 기관(단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재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절사함)
6. **결석 등 개인적인 사유와 출석인정의 결시로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1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만큼의 봉사활동으로 보충해야 한다. 전염병, 상고, 학교 행사 등 출석인정의 경우도 출석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봉사활동은 실제 이수한 시간만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7. **개인 병원에서 봉사활동 인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길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사랑병원, 한림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8. **농협 하나로마트, 은행 등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영리단체 및 업체의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
9.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 시간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나?**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므로 인정한다.
10. **종교 단체에서 활동한 봉사활동은?**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일부로 하는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 단, 종교 단체의 계획 하에 외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가능하다.
11. **주 5일제 기간에 학교에 나와 봉사활동을 하고 근무조 선생님이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우나, 인근의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았다면?**

학교 내 봉사활동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인정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에서의 활동은 해당 초등학교가 타당한 봉사활동으로 인정한 경우만 가능하다.
12. **아파트 관리 사무소 청소도 봉사활동에 포함되는지?**

인정할 수 없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사무소에 속한 노인정의 경우 청소는 관리소 직원들의 몫으로 본다.
13. **헌혈의 기록은?**

헌혈은 만16세 이상이고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시행한 경우 인정한다.
14. **부적절한 봉사활동 사례는?**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문예작품(글짓기, 그림) 공모전 응모,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 가입자 추천,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빙자한 수익사업 운영에 참여 사례 등 봉사활동 인정 불가하다.

2024. 3. 18.

계 산 중 학 교 장